

제35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5. 1. 24.(금)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78
제출일자	2025. 1. 10.
회부일자	2025. 1. 14.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남정해)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박선하 의원 외 14명

2. 제안이유

- 기존의 장거리 송전 시스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 에너지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접근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3조)
-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심의·조정 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 마.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10조)
- 사.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공감대 확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12조)
- 아.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4. 관계법령: 붙임

5.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의견 반영
- 나.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 유발요인 없음
- 라. 해당부서 의견: 의견 없음(에너지정책과)
- 라.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 중심 전력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분산 설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장거리 송전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더불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기존 에너지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비교

구분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	미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 · 원거리 해안가 발전 → 수도권內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 · 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 가능
인프라 (전력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위주의 전국적 네트워크 · 일방향적 전력 계통체계 * 발전사업자 → 송·배전사업자 →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위주의 마이크로그리드 · 프로슈머형 전력플랫폼 기반의 양방향 계통체계
전력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전력시장 · 변동성 재생에너지 급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소비, 수요지 인근 거래가 중심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실시간 시장 등으로 재생에너지 관리 강화
에너지 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 + 적극적인 주민 참여 체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2021.6.30

- 이에 경상북도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육성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는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 내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해 적절해 보임.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

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
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
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
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
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
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
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
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
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

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관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분산에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 안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5조1)에

1)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따른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과의 연계가 되도록 하였음.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보급량·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공급 등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심의사항)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6조2)에 따른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에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6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요청)는 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보조·용자)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조 또는 용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함.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효율성·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안 제10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는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2조(사회적공감대 확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안 제13조(분산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내용, 공공기관 위탁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안내·홍보·조사 및 연구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및 실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현재 대규모 원전 및 석탄발전소에 적합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탄소중립 시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참고 1

타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추진 현황

시도	추진현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형 분산에너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23.9.) •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정책연구과제」 시행('23.11.부산연구원) • (특화지역) 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소재)와 산업단지 일대 추진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24.12.19)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연구용역」 추진('24.3.) • (특화지역) 덕적도·굴업도 인근 해역의 해상풍력지구* 추진 <p>* 오세테드(덴마크), 한국남동발전 등 참여하여 2030년까지 6.2GW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예정</p>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23.8.) •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23.8.)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3.10., 울산TP) • (특화지역) 전력소비가 큰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추진 •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24.7.11, 울산TP내, 2개팀 10명 구성 (시,울산TP,울산연구원)) •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24.12.25)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지역) 강릉·동해·삼척 등 동해안 석탄발전소 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추진 <p>*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로 데이터센터 냉방 지원하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 약속('24.3. 민생토론회)</p>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지역) 당진·보령·서천·태안 등 발전소 소재 지역 추진 <p>※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50%) 밀집</p>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4.3)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 발족·운영('23.9.) •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23.10.)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 개최('24.6.14., 국회) - 6개 시군 7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비즈니스 모델 제시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23.9) •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23.9) • (특화지역) 전력수요처 확보가 용이한 군산국가산단 또는 새만금산단, 전력자립률 100% 초과하고 전력계통 연계 가능한 시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24.11.1)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그룹 구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력 수요 발굴 등 <p>※ (도의회) 지역별 전기요금 관련 대정부 건의안 발표('24.2.)</p> <p>-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요금체계 세분화하고, 지역요금 신설 촉구</p>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발표('22.4., 산업부·제주도 공동) ※ 분산에너지 정부 공모 실증에 총 1,655억원 규모의 8개 사업 선정·추진 •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4.3.)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바. (생략)

사. 자연보호활동

자.~너.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위치·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보조·융자)
- 제10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 조례안은 산업부에서 2025년 추진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의 수반이 예상되지만,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소요 사업비 판단이 곤란하고 기술적 추계 및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에너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미경 (054-880-7641)



수신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에너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에너지정책과-6016(2024.12.30.)호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9조(보조·음자), 제10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3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조례 시행에 따라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을 뿐, 비용추계에 필요한 지원 금액, 범위, 규모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안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을 결정할 시 향후 재정부담이 예측되는 바,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